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3 일대 등 3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명칭

연번	지역명	구분	면적(㎡)	비고
1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보전구역	69,566	올림픽공원
2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보전구역	748,174	서울대학교
3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소계	132,578	개발제한구역
		핵심보전구역	95,307	
		완충보전구역	37,271	
	합계		950,318	

2. 위치 및 면적

가.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조서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	송파구 방이동 88-3	공원	440,063.6	9,694
2	송파구 방이동 88-4	공원	11,977.3	1,282
3	송파구 방이동 88-5	공원	9,407.0	739
4	송파구 방이동 88-6	하천	134,174.8	44,956
5	송파구 방이동 88-10	공원	52,046.9	12,895
	합계			69,566

나.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조서

번 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	관악구 신림동 산56-1	임야	2,956,332	97,638
2	관악구 신림동 산56-2	임야	3,029,671	650,536
	합 계			748,174

다.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조서

번 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합 계			132,578
	완 충 보 전 구 역	소계		37,271
1	종로구 부암동 산7	임야	10,512	3,814
2	종로구 부암동 10-1	구거	727	727
3	종로구 부암동 13-3	구거	374	374
4	종로구 부암동 13-4	구거	126	126
5	종로구 부암동 66-9	구거	1,815	1,815
6	종로구 부암동 87	전	8,248	2,352
7	종로구 부암동 87-1	도로	63	63
8	종로구 부암동 87-3	전	2,966	2,966
9	종로구 부암동 87-4	전	141	141
10	종로구 부암동 88	전	17	17
11	종로구 부암동 88-1	전	119	119
12	종로구 부암동 103-6	구거	327	327
13	종로구 부암동 109-2	임야	22,768	22,768
14	종로구 부암동 109-3	도로	268	268
15	종로구 부암동 109-4	구거	688	688
16	종로구 부암동 109-5	임야	594	594
17	종로구 부암동 109-6	임야	112	112
	핵 심 보 전 구 역	소계		95,307
18	종로구 부암동 산7	임야	10,512	6,698
19	종로구 부암동 산8-1	임야	1,610	1,610
20	종로구 부암동 산8-3	임야	2,988	2,988
21	종로구 부암동 산8-4	임야	757	757
22	종로구 부암동 산9	임야	793	793
23	종로구 부암동 산10	임야	4,165	4,165
24	종로구 부암동 산11	임야	17,752	17,048
25	종로구 부암동 산12	임야	13,388	8,374

번 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26	종로구 부암동 산25	구거	982	982
27	종로구 부암동 산26	도로	1,050	1,050
28	종로구 부암동 87	전	8,248	5,896
29	종로구 부암동 87-2	전	5,888	5,888
30	종로구 부암동 89	임야	380	380
31	종로구 부암동 90-1	임야	1,140	1,140
32	종로구 부암동 91-1	임야	4,354	4,354
33	종로구 부암동 91-12	임야	727	656
34	종로구 부암동 109-1	임야	321	321
35	종로구 부암동 111	임야	7,660	7,660
36	종로구 부암동 112	임야	310	310
37	종로구 부암동 112-1	임야	483	483
38	종로구 부암동 113	임야	376	376
39	종로구 부암동 113-1	임야	153	153
40	종로구 부암동 114	임야	2,139	2,139
41	종로구 부암동 114-1	도로	83	83
42	종로구 부암동 114-2	도로	350	350
43	종로구 부암동 115	대	215	215
44	종로구 부암동 115-1	대	1,914	1,914
45	종로구 부암동 115-2	대	258	258
46	종로구 부암동 117	전	1,254	1,254
47	종로구 부암동 117-1	전	217	217
48	종로구 부암동 118	대	545	465
49	종로구 부암동 119-1	구거	2,075	2,075
50	종로구 부암동 119-2	도로	1,025	1,025
51	종로구 부암동 120-1	임야	958	958
52	종로구 부암동 121	임야	347	347
53	종로구 부암동 122-1	임야	2,579	2,323
54	종로구 부암동 122-2	임야	12,172	9,601

3. 지정사유

가.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방2급하천인 성내천의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청룡다리부터 성내교 사이의 구간은 도시하천으로
는 보기 드물게 자연형 하천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오색딱다구리 등의 서
울시 보호야생동물이 서식 및 관찰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지역으로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필요

나.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악산 칠성당계곡 일대는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회양목 군락이 골짜기 사이사이에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양목 자생지(군락지 합산 면적 약 3,003㎡)이나, 계곡을 따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어 비교적 굽고 오래된 회양목중 일부가 조각용 등으로 도벌되는 등 회양목 자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우리나라 토종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필요

다.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북악산 북사면에 위치한 백사실계곡은 흐르는 물이 비교적 깨끗하고 주변 숲 또한 자연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계곡 상류에는 자연부락인 능금마음이 위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필요

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형도면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 : 붙임2 참조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 : 붙임3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행위제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 제1항)

-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撒布)하는 행위 또는 주입하는 행위
-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土石)의 채취 및 오염
- 수면(水面)의 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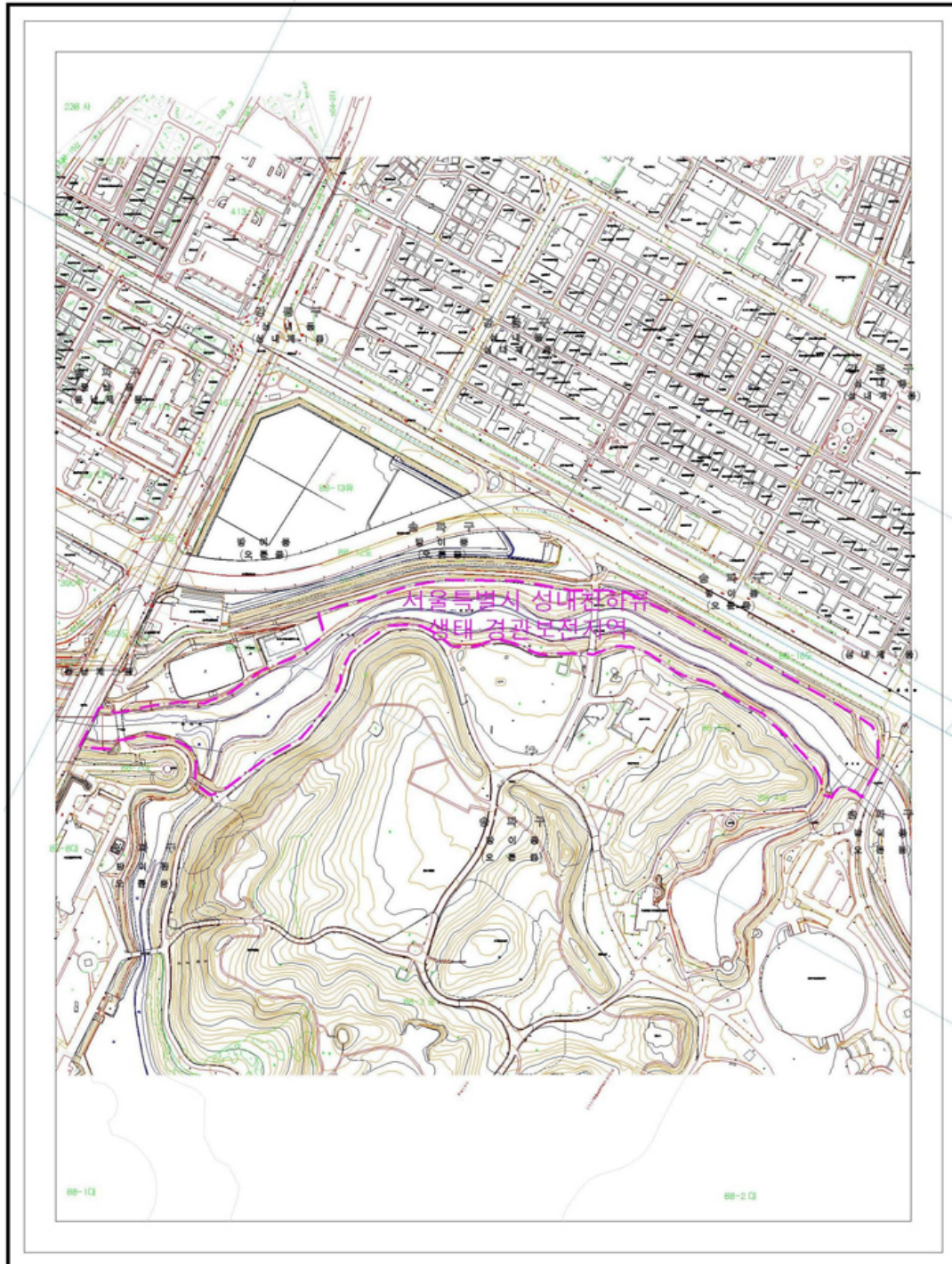
나. 금지행위(『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제3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특정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인화물질(휘발유·등유 등의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나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동·식물의 등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가축을 방목하거나 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 완충보전구역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 완충보전구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

-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및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경영계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장이 해당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 및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6.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9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 가. 행위제한 위반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나. 금지행위 위반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나. 위임관리기관(『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8조)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 송파구(공원녹지과)
 -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 : 관악구(공원녹지과)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 종로구(공원녹지과)
8.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를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2115-7550) 및 관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송파구 공원녹지과(☎2147-3401), 관악구 공원녹지과(☎880-3689), 종로구 공원녹지과(☎731-146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성내천하류(올림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축척 1:3,000